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468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5144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4.
판 결 선 고	2016.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39,606,620원, 농어촌특별세 31,980,310원 및 지방교육세 59,300,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6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